

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4년 10월13일

발 의 자 : 이범윤의원외 6인

제안이유

- 사무관리규정이 개정(2002.12.26)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문서심사관제에 대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

주요내용

-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으로 문서심사관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내용중 일부 내용을 삭제

참고사항

-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단서중 “처리과의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후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6조(공인의 날인)①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, 결재문서와 일치 여·부 등을 대조 심사후 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<u>처리과의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후</u>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	<p>제 6 조 (회 의) ① 다만,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..</p>